공 개

의안번호	제 72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2. 13. (제 3 차)

의결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2. 13.

1. 의결주문

「전자금융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골자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명시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안 제7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규제 미포함)

라.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11.17. ~ 12.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 지>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국내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안전과	디지털금융총괄국
연 락 처	02-2100-2979	02-3145-7125